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761
----------	------

제출년월일 : 2015.11.18.

제출자 : 안산시장

제안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시 허가면적 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허가자 입장을 고려한 불합리한 규제 개정.

주요내용

- 가. 도시공원 및 녹지의 납부한 점용료 미환불 규정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귀책 사유가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환불하도록 규정 마련.(안 제4조제2항제3호)
- 나.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를 위한 면적 산출 기준을 신설.(안 별표)

개정조례안 : 불임1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2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3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5. 10. 03. ~ 2015. 10. 23.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불임4

- 방침결정문 : 불임5

< 불임 1 >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공원 등 점용허가를 받은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된 건에 대하여도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소관 실과		공원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공원과장 한상철
	담당·팀장 직위·성명	공원행정담당 권기록
	담당자 성명·전화	정효진 (행정 2414)

[별 표]

점 용 료

점 용 대 상	점 용 료
1.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 분의 8
2.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공동구 및 이 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 분의 3
3.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시설 공작물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 분의 5
4. 기존 시설물의 사용	사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 분의 5
5.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	채취물건에 대한 산지 근처의 시가에 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 의 100분의 5
6. 전주, 전선, 변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 분의 10
7.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 설, 관개용수로,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 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비상급 수 시설,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 분의 3
8. 초소, 표지판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 분의 10

* 비 고

- 점용면적은 점용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변압기, 개폐기 등과 같이 동일 목적으로 2개 이상 설치할 경우 시설사이에 공간이 협소하
여 공원 및 녹지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경우 그 공간 면적을 점용면적에 포함하며, 점용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상 헌스를 설치한 경우 안전헌스설치면적을 점용면적에 포함한다.
-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할 경우 수직설치시는 수평투영면적이 넓은 관직경
을 폭으로 하고, 근접한 관로의 병렬설치시에는 양 관로의 가장자리를 너비로 한다.

< 불임 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점용료 징수방법) ①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신설>	제4조(점용료 징수방법) ①(생략) (현행과 같음) ②(생략)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현행과 같음) 3. 도시공원 등 점용허가를 받은자의 귀책 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별표]

점
용
료

점 용 대 상	점 용 료
1.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 주차장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8
2.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공동구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3
3. 경기, 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 공작물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5
4. 기존 시설물의 사용	사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5
5.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	채취물건에 대한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
6. 전주, 전선, 변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7.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비상급수 시설,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3
8. 초소, 표지판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별표]

점
용
료

점 용 대 상	점 용 료
1.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 주차장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8
2.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공동구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3
3. 경기, 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 공작물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5
4. 기존 시설물의 사용	사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5
5.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	채취물건에 대한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
6. 전주, 전선, 변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7.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비상급수 시설,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3
8. 초소, 표지판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 비고

- 점용면적은 점용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변압기, 개폐기 등과 같이 동일 목적으로 2개 이상 설치할 경우 시설사이에 공간이 협소하여 공원 및 녹지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경우 그 공간 면적을 점용면적에 포함하며, 점용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상 헌스를 설치한 경우 안전헌스설치면적을 점용면적에 포함한다.
-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할 경우 수직설치시는 수평투영면적이 넓은 관작경을 폭으로 하고, 근접한 관로의 병렬설치시에는 양 관로의 사상리를 너비로 한다.